성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성주군도시계획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며, 기존 개발행위허가시의 허가기준 등 성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저공해 공장 신축(증축포함)을 위한 토지형질변경(1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하여는 성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토록 규정**(안 제25조제2항)**

나.「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을 규정**(안 제53조제2항)**

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가격의 안정화 기여**(안 제58조제3항)**

라.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만 허용 되었으나, 일반용 창고시설도 허용**(별표 19)**

마. 2006.5.9「건축법」의 개정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바. 법 제13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성주군도시계획조례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조항을 개정 삽입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 제57조, 제71조, 제85조, 시행령 별표 1~27호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13조

(2)「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3) 건축법 시행령【별표1】"별첨"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7. 3. 29 ~ 4. 18(20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성주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협의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완료

(5) 성주군도시계획조례안 별표 1-24호 : 붙임과 같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도시계획조례”를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별표 19 제2호카목 및 별표 23 제2호타목(별표 19 제2호 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30조제4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제4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 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 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제6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건축법 시행령」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4호 내지 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제4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제2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제2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제4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도서관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중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를 “영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0조 본문중 “영 제85조제4항의”를 “영 제85조제6항의”로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제62조”를 각각 “제58조”로 한다.

제61조중제1항중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를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자 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로 하고, 동조동항후단중 “제62조”를 제58조“로 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별표1 내지 2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6. 8. 17.>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개정 2006. 8. 1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개정 2006. 8. 17.>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개정 2006. 8. 17.>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개정 2006. 8. 17.>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개정 2006. 8. 1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6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개정 2005. 9. 8, 2006. 8. 1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7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 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하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유치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개정 2005. 9. 8, 2006. 8. 17>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7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공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유치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개정 2005. 9. 8, 2006. 8. 17>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9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개정 2006. 8. 17>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0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유치원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개정 2006. 8. 17.>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개정 2006. 8. 17>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2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개정 2006. 3. 23, 2006. 8. 17>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3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개정 2006. 8. 1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개정 2006. 8. 17>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개정2004.1.20, 2005.1.15, 2006.3.23, 2006.8.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개정 2005. 7. 27, 2006. 8.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개정 2006. 8. 17.>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개정2004.1.20, 2005.1.15, 2005.7.27, 2005.9.8, 2006.8.17>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9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제2호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카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중 폐기물 중간 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 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개정 2006. 8. 17>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개정 2006. 8. 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개정 2006. 8. 1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별표 23】<개정 2006. 8. 1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3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19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8 제2호 자목 및 별표 19 제2호 카목·타목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4】<개정 2006. 8. 17.>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별표 18 제2호나목,다목, 및 별표 22 제2호나목,다목,자목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 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4차선의 개설도로는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성주군도시계획조례	제명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 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2. (생 략) <신 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②별표 19 제2호카목 및 별표 23 제2호타목(별표 19 제2호 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생 략)**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현행과 같음)** 4. ----------제7호의 판매시설 5. ----------제13호 6. ----------제15호------- 7. ----------제16호------- 8. ----------제17호-------- 9. ----------제18호-------- 10. ----------제19호---------- ---------- 11. ----------제20호---------- ---------- 12. ----------제21호---------- ---------- ---------- 13. ----------제22호---------- ---------- 14. ----------제26호---------
제31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생 략)**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제31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현행과 같음)** 4. ----------제7호의 판매시설 5. ----------제13호---------- ---------- 6. ----------제15호---------- 7. ----------제16호---------- 8. ----------제17호---------- 9. ----------제18호---------- 10. ----------제19호---------- ---------- ---------- ---------- ---------- ----------

현 행	개 정 안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1. ----------제20호----------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제21호----------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제22호----------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4. ----------제26호----------
제32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6. ----------제7호 판매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7. ----------제13호----------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제15호----------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9. ----------제16호----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10. ----------제17호-----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1. ----------제18호-----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 ----------제19호----------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제20호----------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제21호----------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제22호----------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6. ----------제26호----------
제33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제7호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제13호----------

현 행	개 정 안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6. ----------제15호----------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제16호----------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8. ----------제17호----------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9. ----------제18호----------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0. ----------제19호---------- ----------.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1. ----------제20호----------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제21호----------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제22호----------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4. ----------제26호----------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1. ----------제17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2. ----------제18호----------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3. ----------제19호----------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4. ----------제20호----------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5. ----------제21호----------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제22호----------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7. ----------제26호----------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제7호 판매시설

현 행	개 정 안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제13호----------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6. ----------제15호----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제16호------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8. ----------제17호------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9. ----------제18호----------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0. ----------제19호---------- ----------.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11. ----------제20호----------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제21호----------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제22호----------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4. ----------제26호---------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2. ----------제9호----------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제13호----------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4. ----------제16호----------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5. ----------제17호------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6. ----------제18호-----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제19호----------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제20호----------

현 행	개 정 안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9. ----------제21호----------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0. ----------제22호----------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2. ----------제26호--------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2.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3. ----------제9호----------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4. ----------제15호----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5. ----------제16호------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6. ----------제17호------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제18호-----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제19호----------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주차장을 제외한다)	9. ----------제20호----------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제21호----------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제22호----------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가. ---------- 나. ----------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3. ----------제26호-----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 3 **(생 략)**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 3 **(현행과 같음)** 4. ----------제9호---------- 5. ----------제10호---------- 6. ----------제16호---------- 7. ----------제18호---------- 8. ----------제19호---------- 9. ----------제20호---------- 10. ----------제21호---------- 11. ----------제22호---------- 12.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가. ---------- 나. ---------- 13. ----------제26호----------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제14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제14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 ----------제15호---------- 2. ---------- ----------제16호---------- 3. ---------- ----------제19호----------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①---------- ----------

현 행	개 정 안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생 략)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규정에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1. ~ 4.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	제60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 영 제85조 제6항의----------

현 행	개 정 안
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 ---------- ----------.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생 략)	---------- ---------- ----------제58조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 (토지이용확인서 발급수수료)	<삭 제>